



Newsletter

ATSUMI & SAKAI
www.aplawjapan.com

2025 년 8 월 12 일

No. A&S_35

일본의 반덤핑 조사 현황과 실무상 유의점

저자 : 변호사 [테즈카 타카시](#) / 변호사 [다이몬 유카](#) /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0)(※)0)} [이 정](#)

(0)(※)0)외국법 사무 변호사 미등록

1. 서문

최근 일본에서도 반덤핑(부당한 염가판매) 조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중화인민공화국(홍콩지역 및 마카오지역 제외)산 흑연전극(원통형으로, 주로 전류에 의한 열로에서 철 스크랩을 용해하는 전기로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염가판매 관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에서는 그동안의 무역구제 안건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본의 반덤핑 조사 현황 및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조사 현황

일본의 관세정률법은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당국이 반덤핑(Anti-Dumping, AD)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1930 년대에 3 건의 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60 년간 AD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3 년 처음으로 AD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¹.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건수가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¹ 시바야마 센리 「일본이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은 70 년 동안」.

대상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에 그 개요²를 정리하였습니다

표 1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 개요³

품목명	조사기간	과세 기간	대상 기업	세율
페로실리콘망간(관세정률 법 별표 제 7202.30 호에 기재)	1991. 11. 29 - 1993. 2. 3	1993. 2. 3 - 1998. 1. 31	중국야금진출구공사 사천분공사, 중국야금진출구총공사, 중국야금진출구공사 길림철합금분공사, 상하이시 오금광산진출구공사, 중국유색금속진출구총공사 절강분공사 등	4.5 %, 10.1%, 11.3%, 19.1%, 8.5%, 8.5%.
전해이산화망간(관세율법 별표 제 2820.10 호에 기재)	2007. 4. 27 - 2008. 8. 22	2008. 9. 1 - 2029. 2. 25	귀주홍성발전대륙업유한책임공 사, 상탄전기과학기술유한공사 등	34.3%, 46.5%
톨루엔디소시아네이트(관 세율표 제 2929.10 호에 기재)	2014. 2. 14 - 2015. 4. 14	2015. 4. 25 - 2020. 4. 24	창저우대화그룹유한공사, 상해바스프우레탄유한공사 등	69.4% (일률)
수산화칼륨(관세율표 제 2815.20 호에 기재)	2015. 5. 26 - 2016. 8. 2	2016. 8. 9 - 2026. 8. 12	UNID Jiangsu Chemical Co.,Ltd.(중국 UNID), Jiangsu OCI Chemical Ltd.(중국 OCI) 등	73.7% (일률)
고중합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관세율표 제 3907.61 호에 기재)	2016. 9. 30 - 2017. 12. 15	2017. 12. 28 -2028. 2. 2	화윤포장재유한공사, 원방공업(상해)유한공사, 절강만개신재료유한공사, 해남일성석화유한공사 등	39.8%, 51.0%, 51.4%, 53.0%
탄소강 용접식 피팅(관세율표 제 7307.93 호)	2017. 3. 31 - 2018. 3. 14	2018. 3. 31 - 2023. 3. 30	영구 라오허기계관건유한공사, 영구시북방관건유한공사, 허베이성천관건집단유한공사 등	57.3% (일률)

² 표 1의 사례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흑연전극에 관한 조사 사례까지 조사가 실시된 것에 한합니다. 본 뉴스레터 작성 시점에 해당 날짜 이후에 조사가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아래 주 3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³ [일본 경제산업성 HP 일본 조사사례 반덤핑관세\(AD\) 조치](#)

트리스(클로로프로필) 인산염(관세법 별표 제 2919.90 호)	2019. 9. 26 - 2020. 9. 16	2020. 9. 17 - 2025. 9. 16	태주서세특신소재유한공사, 태주신안난연재료유한공사, 부동화학유한공사, 마루야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양주천화신소재유한공사 등	37.2% (일률)
용융아연도금철선(관세율 법 별표 7217.20, 7229.90 호에 기재)	2021. 6. 14 - 2022. 12. 7	2022. 12. 8 - 2027. 12. 7	베카르트(청도) 강선제품유한공사, 천진화원시대금속제품유한공사 , 천진화원선재제품유한공사 등	26.5%, 41.7%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데이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반덤핑 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대상국입니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호주, 스페인, 한국 등도 반덤핑 조사 대상국⁴입니다.

3. 조사기관

반덤핑 조사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조사기관)에 의해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4 년부터 중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반덤핑 조사(이하 '중국산 흑연 전극 AD 조사')에서는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에 의한 합동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⁵. 조사 당국은 일본 국내 업계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⁶. 반덤핑 조사는 크게 덤핑 조사와 피해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자 등에 대한 덤핑조사는 재무부 관세청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에서 담당합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후 조사대상 화물의 공급자(해외 생산자 및 및 수출자)는 재무성에서 송부한(또는 재무성 또는 경제산업성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확인서 및 질문서 등을 모두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⁷. 재무부에서 송부하는 서류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도 포함되며, 손해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량의 감소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하여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실질적 손해, 또는 실질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우려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관세국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은 1 년(반덤핑 협정에서

⁴ 상동

⁵ 2024 년 4 월 24 일자 경제산업성 보도자료(재무성 동시 발표) 「중화인민공화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부당한 저율관세 부과에 관한 조사를 개시합니다」.

⁶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 「반덤핑(AD)조치의 효과와 활용」(2020 년 4 월) 8-9 페이지

⁷ 세관 HP 부당저렴판매관세(덤핑방지세) 제도에 대하여

규정된 기간으로, 최대 6 개월 연장 가능)에 걸쳐 조사를 실시합니다⁸. 조사대상 해외 생산자 등이 다수인 경우 샘플링을 실시하여 보통 2~3 개 업체 정도로 좁혀집니다.

한편, 피해조사 및 국내 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는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무역경제안전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이 진행합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 동안은 일본 국내 조사대상 화물 생산자 및 조사대상 화물의 산업상 사용자의 확인서 및 질문서 등을 모두 무역경제안전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에 제출하게 됩니다⁹.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화물의 수입이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유무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4. 조사 절차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의 반덤핑 조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협정·법령 등¹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 6 조
- 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 관세정률법 제 8 조
- 부당한 저가판매관세에 관한 법령
- 부당한 저가판매관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반덤핑 조치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 사업자의 신청과 정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동됩니다. 조사 대상인 해외 생산자·수출자 측면에서 본 조사 절차는 아래 그림 1 과 같습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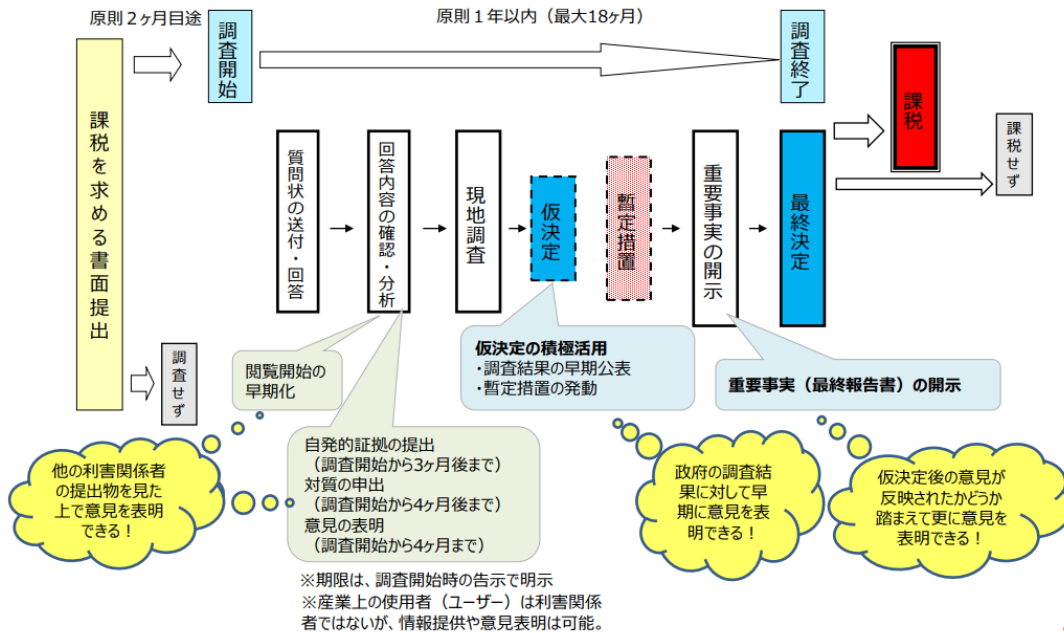
⁸ 경제산업성 HP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2-9

⁹재무성·경제산업성「부당저렴판매관세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의 작성요령」(2020 년 4 월) 3 페이지

¹⁰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법령 목록

¹¹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 「반덤핑(AD)조치의 효과와 활용」(2024 년 4 월) 9p

【参考】AD調査プロセスの詳細



9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술하는 '팩트 어베일러블(Facts Available)'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부당한 저가매각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 적절히 대응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제시하는(추정에 근거한¹²⁾ 부당한 저가판매 과세 금액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대체 국가 선정 및 팩트 어베일러블의 적용

부당한 저가판매차액률(덤핑마진) 산정 시 시장경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생산비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도, 정부가 경제에 상당한 관여를 하는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중국은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비시장경제국으로서의 인정은 덤핑 조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맹했을 때의 가맹 의정서 제 15조에 근거해, 다른 가맹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NME)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WTO 회원국은 중국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생산원가가 아닌 제3국(대체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¹² 신청인은 어느 정도의 부당저렴판매관세가 부과될 것인지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부당저렴판매관세는 국내 판매가격 등(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러한 정상가격이나 수출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저율관세 부과 금액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취급은 최장 15 년으로 되어 있으며, 2016 년 이후에는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과도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환율이 완전히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쉬워졌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국 선정 기준으로 경제발전 수준, 동종 제품 생산 및 판매 여부, 정보 입수 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체국가로 멕시코, 우크라이나,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서가 중국 생산자 등에게 발송됩니다. 이 질문서 중 일부는 시장경제국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생산자가 시장경제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례인 중국 흑연 전극 AD 조사에서는 일본 당국이 조사한 결과,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미국, 일본이 대체 국가로 선정되어, 그 중 독일과 일본에 있는 2 개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¹³.

또한, 반덤핑협정 제 6.8 조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 확인서 및 질문서 미제출)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예: 불성실한 답변이나 모순된 답변 제출, 현지조사 거부 등) 조사당국은 '팩트 어베일러블(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¹⁴. 반덤핑협정 부속서 II 에는 Facts Available 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등으로 공표된 데이터나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팩트 어베일러블이 적용될 경우, 통상보다 높은 부당저가판매차액비율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대상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현지 조사, 잠정 결정 및 잠정 과세

그 후 조사가 진행되어 현지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지 조사는 일본 조사 당국이 실제로 해외 생산자의 사옥을 방문하여, 그때까지의 답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당국은 사전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를(보통 현지 조사 약 2 주 전)에 발송합니다. 또한, 현지 조사 현장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4~5 일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조사 당국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사항 등이 송부되는 점은 현지 방문 조사와 동일하지만 온라인 조사가 2~3 일 정도로 기간이 더 짧습니다. 이는 실제 방문 조사에서는 공장 시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반면, 온라인 조사에서는 그것이 생략되는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현지

¹³ 중국 흑연 전극 AD 조사 중간 보고서 37 페이지

¹⁴ 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METI/경제산업성)

조사가 끝나면 현지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현지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수락한 기업 측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종료되고 덤핑이 존재하거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 잠정 결정이 내려져 잠정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잠정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사례에서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잠정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정 과세는 법령상 조사 개시 후 60 일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일본의 실무에서는 조사 개시 후 8 개월에서 10 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최종 결정

그 후, 중요 사실의 공개라고 불리는 지금까지의 조사 개요를 담은 문서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덤핑, 일본 국내시장 피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당한 저율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간은 최장 5 년이지만, 일정 요건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생산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등의 서류는 모두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됩니다. 이 서류에는 기업비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는 “공개판”과 “비공개판”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비밀정보는 보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맺음말

국제 시장에서의 법적 환경은 복잡하고, 중일 양국의 반덤핑 법제도와 조사 절차는 각각 다릅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 당국의 반덤핑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 절차 및 대응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결국 부당하게 고율의 덤핑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경우, 일본의 반덤핑 법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과 다양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일본의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 통상팀은 풍부한 반덤핑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필자・문의처

본 뉴스레터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테즈카 타카시](#) (파트너, 제일도쿄변호사회)

Email: takashi.tezuka@aplaw.jp

변호사 [다이몬 유카](#) (파트너, 제일도쿄변호사회)

Email: yuka.daimon@aplaw.jp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이 정](#) (어소시에이트, 베이징시변호사회)

Email: cheng.li@aplaw.jp

*외국법 사무 변호사 미등록

저희 사무소의 뉴스레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뉴스레터 신청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뉴스레터는 [이곳](#)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이 예상되는 규제를 포괄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그 개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 소개되어있는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아츠미사카이 법률사무소 외국법공동사업 (‘아츠미사카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는 명백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작성자 및 아츠미사카이는 본 뉴스레터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및 아츠미사카이는 독자가 본 뉴스레터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본 뉴스레터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츠미사카이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무소

〒100-0011 도쿄도 치요다구
우치사이와이초 2-2-2 후쿠쿠
생명 빌딩 (중합안내:16F)



오사카 제휴 사무소

〒530-0005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2-3-18
나카노시마 페스티벌 타워 16 층

후쿠오카 제휴 사무소

〒810-000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 2 초메
12-1 텐진 빌딩 10 층



뉴욕 제휴 사무소

1120 Avenue of the Americas, 4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36



런던 사무소

8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NQ, United
Kingdom



프랑크푸르트 제휴 사무소

OpernTurm (13th Floor)
Bockenheimer Landstraße 2-4,
60306 Frankfurt am Main,
Germany



브뤼셀 사무소

CBR Building, Chaussée de la
Hulpe 185, 1170, Brussels, Belgium



호찌민 사무소

10F, The NEXUS building, 3A-3B
Ton Duc Thang Street, Sai Gon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